

연천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시행규칙 [1991. 9. 13] 규칙 제691호

- 일부개정 1993. 12. 24 규칙 제 785호
- 일부개정 2001. 1. 2 규칙 제 973호
- 일부개정 2001. 7. 3 규칙 제 995호
(연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)
- 일부개정 2005. 1. 13 규칙 제1069호
- 전문개정 2007. 2. 20 규칙 제1135호
- 일부개정 2012. 10. 15 규칙 제1243호
(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)
- 일부개정 2013. 1. 10 규칙 제1251호
(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)
- 일부개정 2014. 5. 23 규칙 제1279호
(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규칙 일괄정비를
위한 연천군 제안규칙 등 일부개정규칙)
- 일부개정 2016. 2. 5 규칙 제1335호
- 일부개정 2018. 3. 7 규칙 제1399호
(연천군 규칙 중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 규칙)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연천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에서 정한 폐기물처리 수수료의 징수와 관리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) 폐기물처리수수료징수는 법령과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관리위탁) ①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지정서(별지 제1호서식)를 교부하여야 한다.

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16. 2. 5>

1. 관리위탁기관
2. 관리자의 주소, 성명, 생년월일(마을단체인 경우 대표자)
3. 관리위탁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
4. 관리위탁계약 및 해지에 관한 사항
5. 그 밖의 계약에 필요한 사항

제4조(수수료의 징수) ①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른 수수료 징수는 개인 또는 단체 단

위로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

② 전항의 영수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.

③ 관리자는 관리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.

1. 운영일지(별지 제3호서식)
2. 영수증수불대장(별지 제4호서식)
3. 수수료징수부(별지 제5호서식)
4. 수입금일계표(별지 제6호서식)

제5조(징수금처리) ① 관리자는 징수부에 매일 수입액을 기재하고 수입일계표를 작성 인근 금융기관에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3. 7>

② 금융기관의 계좌는 군 문화관광체육과장 관리대표자의 공동명의로 개설한다. <개정 2012. 10. 15, 2013. 1. 10, 2018. 3. 7>

③ 관리자에게 교부되는 징수교부금은 매 익월 5일 이전에 교부한다.

④ 징수교부금에 대한 비율은 계약에 따른다.

제6조(수수료의 면제) ① 조례 제8조제4호에 따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1. 약수터이용객
2. 구역내 사찰신도
3. 자연보호활동자
4. 수수료면제신청서(별지 제7호서식)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면제 받은 사람
5.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군민 및 동반하는 미성년 자녀
(그 밖의 신분증은 불가)
6. 제복을 입은 군인·경찰(전투·의무경찰 포함) 및 동반하는 가족

② 군수는 면제신청자가 있을 시 심사하여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.

③ 출입증 서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.

제7조(결산) 관리자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8조(지도·감독) ① 계약사항의 이행여부 및 부당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군수는 수시로 지도·감독 확인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도·감독은 읍·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2. 10. 15 규칙 제1243호,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부터 ④ 까지 생략

⑤ 「연천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시행규칙」 제5조제2항 중 “문화관광과장”을 “문화관광교육체육과장”으로 한다.

⑥ 생략

부칙 <2013. 1. 10 규칙 제1251호,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및 ② 생략

③ 「연천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시행규칙」 제5조제2항 중 “문화관광교육체육과장”을 “문화관광체육과장”으로 한다.

④ 부터 ⑨ 까지 생략

부칙 <2014. 5. 23 규칙 제1279호,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규칙 일괄정비를 위한 연천군 제안규칙 등 일부개정규칙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,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.

부칙 <2016. 2. 5 규칙 제1335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8. 3. 7 규칙 제1399호, 연천군 규칙 중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 규칙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지 정 서

단체명

대표자

귀하를 「연천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」 제5조에 따른 ○○○자연발생유원지 관리자로 지정함.

○ 관리대상 : ○ ○ ○ 유원지

○ 관리면적 : 일대(km²)

. . .

연 천 군 수

[별지 제2호서식]

수 수 료 영 수 증

○대 인

· 전 면

폐기물처리수수료(원부) No. ○ ○ ○ 유원지 금액 : 1,000원 연 천 군 수	폐기물처리수수료(부표) No. ○ ○ ○ 유원지 금액 : 1,000원 연 천 군 수	폐기물처리영수증 No. ○ ○ ○ 유원지 금액 : 1,000원 연 천 군 수
---	---	---

· 후 면

		-자연을 아름답게 환경을 깨끗하게- ○본수수료는 쓰레기처리수수료입니다. ○자기쓰레기는 되가져옵니다.
--	--	--

○소 인

· 금액만 500원으로 인쇄

[별지 제3호서식]

근 무 일 지

결 재			

일 반 현 황	일 자	날 씨	근 무 시 간	근 무 인 원			
				구 분	총 원	실근무	사 고 자
				계			
				대표원			
				관리원			
입 장 객 현 황	구 분	입 장 인 원			수 수 료 수 입		
		계	대 인	소 인	계	대 인	소 인
	누 계						
	금 일						
	전 일						
시 설 물 관 리	<div style="display: flex; align-items: center;"> <div style="writing-mode: vertical-rl; transform: rotate(180deg); margin-right: 5px;">구분</div> <div style="border-bottom: 1px solid black; margin-left: 5px;">시설명</div> </div>	화장실	쓰레기통	소각장	계 도 표시판	쓰레기 수거량	기 타
	관리상태					kg	
기 타	특기사항						

[별지 제4호서식]

영 수 증 수 불 대 장

적요 년월일	적 요	영 수 증(매)			결 재	
		수 령	사 용	잔 량		

※ 적요란 어른, 어린이 구분 기재

[별지 제5호서식]

수 수 료 징 수 부

년월일	적 요	수입액	지출액	잔 액	비 고

[별지 제6호서식]

운 영 일 지

결 재			

일 자	요 일		날 씨				
수 입	구 분	입장인수		금 액	비 고		
	계						
	대 인						
	소 인						
잔 액	구 분	계		대 인		소 인	
		인원	금 액	인원	금 액	인원	금 액
	금 일						
	전 일						
	누 계						

[별지 제7호서식] <개정 2014. 5. 23>

	결				
	재				
수 수 료 면 제 신 청 서					
신 청 인	주 소				
	성 명		생년월일		
면 제 신 청 사 유					
출 입 예 정 일		출입예정인원			
<p>「연천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」 제11조에 따라 ○○○유원지의 폐기물 수 수료를 면제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청인 인</p> <p>연 천 군 수 귀하</p>					

수 수 료 면 제 확 인 서

신 청 인	주 소				
	성 명		생년월일		
승 인 기 간		승 인 인 원			
<p>년 월 일</p> <p>연 천 군 수</p>					

[별지 제8호서식] <개정 2014. 5. 23>

출 입 증

○ 전면

No.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출 입 증</div> 주소 : 성명 : 생년월일 : 출입지역 :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위와 같이 허가함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. . .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연 천 군 수</div>	사 진 2×3
--	------------

○ 후면

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유원지를 출입할 때에는 대표원에게 본증을 제시하여야 한다. 2. 본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재교부 받아야 한다. 3. 본증을 타인에게 양도나 대여할 수 없다. 4. 본증이 필요치 않을 때는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.
--

